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통일부로부터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범사업주 지정요건

고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
 -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
- *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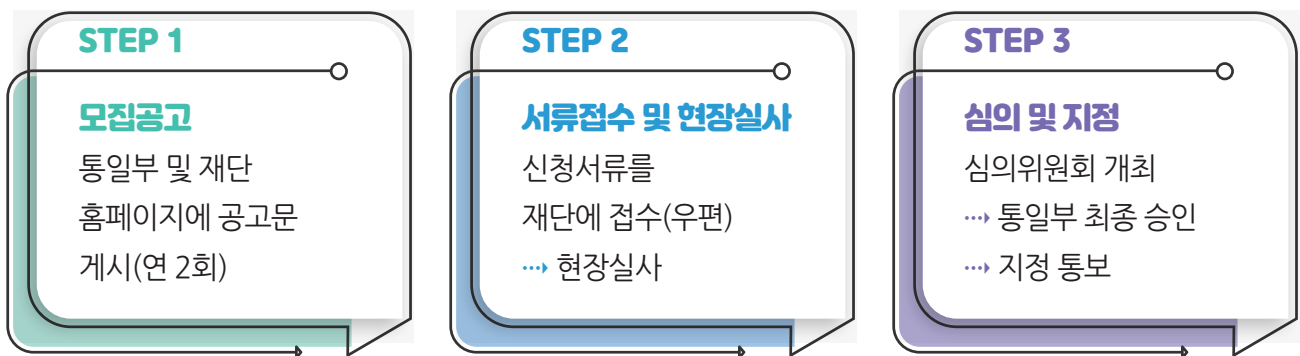
지원내용

-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
-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3년간 지원,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 시설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품질개선 비용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비용
- 경영컨설팅, 채용연계 등 경영개선지원
-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

신청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정절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및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